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05 호
------	---------

제출년월일:1999.12.15.
제 출 자: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및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개정 (안제12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고성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안제24조의 5)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상남도세정13415-10935('99.10.2).세정13415-11108 ('99.11.12)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99 -215호. 제99-242호(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

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제24조의 5(법인등의지방이전에 대한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까지 사업을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u></p> <p><u>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u> <u>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u> <u>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u> <u>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u> <u>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u> <u>한 때.</u></p> <p><u>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u> <u>수도권의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u> <u>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u> <u>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u> <u>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u> <u>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u> <u>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u> <u>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u> <u>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u> <u>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u> <u>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u> <u>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다.</u></p>